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6.

발 의 자 : 박형수 · 안철수 · 김기현

이성권 · 김정재 · 최은석

서지영 · 박성민 · 최수진

박수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.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, 이른바 ‘소쿠리 투표’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.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,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.

현행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감사·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

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,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, 관계 행정기관,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,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를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감사원,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</u> <u>국정조사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</u> <u>하고 국회는 매년 특별위원회를</u> <u>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</u> <u>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한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</u> <u>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</u> <u>지 및 제4조를 준용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</u> <u>에는 제6조제2항 본문에도 불</u> <u>구하고 감사원, 관계 행정기관</u> <u>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</u> <u>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u>